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자 겸임이 가능한가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Q

우리 회사는 상시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환경관리자가 필요하던 차에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환경관리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자를 동시 선임할 수 있나요? 즉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자 겸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질문자의 사례는 원칙적으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노동자 수, 겸임자의 자격 요건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질의회시를 참조, 해당 사업장 인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 보건관리자와 환경기술인 겸임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 따라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회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 면제 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노동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해야 한다.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대기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선임 예정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자격(수질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자격)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인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없고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 분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 관리자는 대기 또는 수질 분야 환경 관련 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 자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2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